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10861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1,080,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 ○구 B 외 1 지상 C빌라 D호, E호, F호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납부고지에 따라 피고가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구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호,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원고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하 생략)

3. 양도소득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괄호 안 생략)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3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단서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 또는 제2항 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끝.